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 Executive Summary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서 2014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반인륜 범죄를 구성한다. COI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권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위해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안보리에 권고했다. 2015년에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가 통과됐다. 2014년 이래 이러한 결의들로 인해 안보리는 COI의 적절한 결론과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적 관용을 가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나 처벌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 해외 언론은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에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억류하고 추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탈북자 증언은 종교인들이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1년 이래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관심대상국(CPC)에 지정되었다. 2016년 2월 29일에 국무장관은 북한을 CPC로 재지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에 1974년 무역법 제 402조 및 제 409조(잭슨-배닉 수정조항) 그리고 동법 제 402(c)(5)조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하여 기존부터 진행 중이던 제한조치등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 미국은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490 만 명(2015 년 7 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정부가 2002 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별 신자수는 개신교 12,000 명, 불교 10,000 명, 가톨릭 800 명이다. 상기 보고서는 19 세기 한국 성리학에 에 기원을 둔 현대 종교인 천도교가 약 15,000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당과 상의하고 주술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널리 행해진다고 하지만 수량화하기 어렵다. 남한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4 년 백서에서 러시아정교회 신부 5 명이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고했다. 한국 및 기타 외국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신자 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 내 기독교 신자를 20 만 명에서 40 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자체 수치에 따르면 종교 신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 년 약 24 퍼센트에서 2002 년 0.016 퍼센트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 법적 토대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이다. 헌법 제 68 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시민들이 종교시설을 건설하거나 종교의식을 행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지만 동 조항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정부문서인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건강,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되고 있다. 특히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해외에서 반입된 성서나 기타 종교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징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도 포함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정부 관행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대우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하여 8 만에서 12 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참혹한 상태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읽기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은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가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2014 년 2 월에 발간된 COI 최종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정보·결사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많은 경우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륜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인륜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해당 연도에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들을 채택했다. 2014 년 이래 이러한 결의들로 인해 안보리는 COI 의 적절한 결론과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 사상이 북한의 개인 우상화 정책에 저항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정치적 조직과 활동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동 보고서는 기독교도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처벌이나 보복 혹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해외 언론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캐나다 목사를 구금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외국인들을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12월에 북한 당국은 캐나다 출신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 국영 매체에 따르면 그의 혐의에는 명시되지 않은 ‘반복 종교활동’이 포함되었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에 대한 조사·탄압·박해가 심해졌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헌법 제 68 조가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주체사상은 사망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가 일종의 국가후원 이데올로기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북한 전역에 약 10만 곳의 주체사상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모든 시민이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시민들에게 강제되지 않은 신념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평양에는 세 곳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와 가톨릭 교회(장충성당) 그리고 성삼위일체교회(Holy Trinity Russian Orthodox Church) 등 5 곳의 기독교 교회가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 방문 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갔던

방문자들에 따르면 참석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참석자라기 보다는 참관인으로 보였다고 한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고,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나 가톨릭 교회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협회, 조선종교인협회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들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는 또한 조선정교위원회(Korean Orthodox Church Committee)의 존재를 언급했다. 남북 종교간 교류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극히 미미했다.

10 월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 주일간의 종교 모임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북한에 초대했다. 하지만 이 모임의 의제는 주로 종교의 자유나 종교 문제와 관련 없는 이슈들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국제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7 개 종교단체 소속 150 명이 11 월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한 기도행사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언론 매체들은 또한 한국의 종교 지도자 대표단 두 팀이 11 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예배식에 참석하기 위해 개신교 교회와 가톨릭 교회를 방문하고 장총교회 보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12 월에 한국 천주교회측은 광주대교구가 2016 년 평양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는 등 “정기적”으로 사제를 북한에 파견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총성당에서 기본적인 의식을 거행하지만 로마 교황청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 로마 교황청이 인정하는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 혹은 수녀가 북한에 상주하지 않는다. 임시로 체재하는 사제들이 과거에 장총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했던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주 목사인지 혹은 임시로 체재하는 목사인지는 확실치 않다.

5 명의 러시아정교회 사제들이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 아인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성삼위일체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2014 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북한에 64 개의 불교 사찰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찰들이 북한에서 종교적 중요성을 상실하고 단지 문화유적지 혹은 관광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2015 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대부분은 불교 사찰이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불교 승려를 종교인으로 보지 않았다.

2014 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는 북한 전역에 52 개의 천도교 교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신교 및 불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3 년제 대학 과정, 김일성대학 종교학과, 사제 양성 대학원 과정, 기타 기독교 혹은 불교 교단과 연계된 신학대학 등 종교 교육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 년 7 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 개소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5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일부 평양 주민들은 가정 예배소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평양 밖의 주민들 대부분은 그러한 가정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한 가정 교회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을 예배장소로 알아볼 수 없었다. 2014 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에 언급된 9 천여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 교회라고 알려진 곳을 본적이 없었고 응답자의 단 1.2 퍼센트만이 가정 교회의 존재를 믿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99.6 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탈북자의 4.2 퍼센트만이 북한에 있는 동안 성서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COI 보고서는 당국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소수의 교회를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읽기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은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가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백서는 북한 관리들이 종교 물품은 물론 정부에서 부적당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물품들을 찾기 위해 항구나 공항에서 반입되는 포장물이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무속 행위가 늘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뤄져 왔지만 비정부기구들은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무속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정부 당국이 무속 단속에 나섰다고 비정부기구들이 보도했다.

통일연구원 백서는 정부가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 정치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했다. 북한 현지에서 공인 종교단체 대표들을 만나본 외국인들은 일부 관계자들이 실제 교인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종교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보고는 없지만, 정부는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9천 여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교 박해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힌 사람은 없었는데 이는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지식과

접근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자들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있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월에 외교 당국 대변인은 미국이 ‘반북 책동’을 위해 ‘종교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일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내 전도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주민들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정부 수행원이 항상 동행했다고 보고했다. 그와 같은 단체들의 일부 직원은 자신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 북한 정부는 한국 종교단체들이 종교시설을 수리하고 건설할 수 있게 허락했다.

기독교 신자는 사회적 계급과 가문을 기준으로 주민의 신분을 분류하고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성분 제도하에서 최하층을 구성한다. 성분 분류 제도로 인해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탈북자 증언은 종교인들이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연구원 백서는 북한 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나 지하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검증이 어려웠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하 교회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지하 종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하 회중의 규모는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접경 지역에서 중국 주민이나 단체와의 접촉을 계기로 북한 내에서 금지 대상 종교 물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비밀 종교 회합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돼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된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종교단체들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교구를 운영하는 공인 종교단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종교행사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되었다. 2016 년 2 월 29 일에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1974년 무역법 제 402 조 및 제 409 조(잭슨-베닉 수정조항) 및 동법 제 402(c)(5)조에 따라 진행 중인 기존의 대북 제한조치들을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연례 결의안들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들을 채택했다. 또한, 이 결의안들은 북한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거의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정부가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 정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의 기회를 빌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인권특사를 포함한 미국의 고위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자 및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들과 만남을 가졌다.